

제품 · 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

조합 기획조정팀 제공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이 2002년 2월 4일부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동 법률과 관련하여 지난 2002년 12월 10일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동 EPR제도의 시행과 함께, 2003년 1월 1일부터는 재활용가능자원『분리배출표시제도』가 시행되며, 7월 1일부터는『1회용 합성수지 용기 규제확대』가 시행되는 등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골판지포장재는 대상이 아님)에 대한 다각적인 규제조치가 예상되는바, 생산자가 재활용의무를 직접 수행해야 하는 사회적 제도가 강화되어 포장재에 대한 재활용율을 높이는 한편 궁극적으로 분리배출표시제의 의무적용대상이 아닌 골판지 및 지류 포장재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1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 법률시행령 주요내용

■ 2003년 1월 1일부터 제품 · 포장재의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지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가 시행.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 시행령이 12월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이에 따라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이 확정.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가 시행됨으로써 재활용 사업자가 수익성이 있는 품목만을 골라 재활용을 하고, 그렇지 못한 품목은 매

립 · 소각되고 있는 현재의 재활용체계에서 생산자가 재활용 의무를 직접 수행함으로 인해 보다 많은 품목이 재활용되고, 재활용율도 크게 높아질 수 있는 기반이 마련.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게 된 배경은 오늘날 대량생산, 대량소비 체계하에서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을 확대 강화해 나감으로써 매립 · 소각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자원순환형 사회를 형성해 나가기 위해서는 정부와 소비자의 책임 외에 생산자에게 제조 · 판매한 제품에 대한 회수 · 재활용 책임을 부여할 필요가 있

기 때문.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는 제품 · 포장재의 생산자에게 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제품의 설계 · 제조과정에서 소재 및 디자인 선택, 구조개선을 통해 폐기물의 원천 감량화와 재활용이 보다 촉진되도록 하는 제도로서 독일, 영국 등 유럽 15개국과 일본 대만 등지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제도.

■ 환경부는 지난 '92년부터 금속캔, 유리병,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 생산자가 출고량 전체에 대해 재활용 비용을 예치하도록 한 후 재활용 실적에 따라 이를 환급하는 "폐

기기를 예치금 제도"를 운영하여 왔으며 이번에 이를 보다 보완 발전 시켜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기반 마련을 위하여 '00년부터 전자제품, 금속캔 등 7개 품목에 대해 사업자단체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시범사업을 실시.

■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의 세부 시행방안을 살펴보면,

- 첫째, 재활용의무 대상품목은 전자제품, 금속캔 등 기존 예치금 품목인 제품·포장재 15종과 신규 도입 3개 품목(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플라스틱포장재) 총 18개 품목이며, 그 시행시기는 2003년 1월1일부터임.
- 그러나, 대상품목 중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회수 및 재활용 기반구축이 필요한 일부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었는 바, 형광등과 플라스틱포장재 중 필름류는 2004년부터, 이동전화단말기와 오디오는 2005

년부터 시행.

- 둘째, 재활용의무 대상자는 제품의 경우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포장재의 경우 "포장재(용기)에 담은 내용물"의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가 되며, 이를 의무부담 대상자가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
- 다만, 포장재의 경우 영세사업자가 많은 점을 감안하여 연 매출액 10억원 이하의 생산자 및 연 수입액 3억원 이하의 수입자는 대상에서 제외.
- 셋째, 재활용 의무총량은 품목별로 생산자의 출고량, 재활용량, 분리수거량 등 재활용 여건을 고려하여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환경부장관이 고시하고, 개별 생산자별 재활용 의무량은 의무총량 중 전체 출고량에 대한 개별 생산자별 출고량 비율, 즉 시장점유율에 따라 결정.
- 넷째, 개별 생산자는 부여된 재활용 의무량을 아래 3가지 방법 중 한가지를 선택해서 의무이행이 가능.
- 생산자가 재활용공장을 설치하여 직접 재활용
- 생산자가 재활용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재활용
- 생산자가 재활용공체조합에 가입하여 분담금을 납부하고 재활용 위탁,
- 다섯째, 재활용 의무자가 재활용 의무량을 이행하지 못했을 때에는 미달성량에 대해 품목별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전과정에 소요되는 실 재활용비용의 115%~130%까지를 부과금으로 부과.
- 여섯째, 생산자의 직접 회수가 가능한 TV, 냉장고, 세탁기, 컴퓨터, 이동전화기 등 전자제품은 판매업자가 무상으로 회수하도록 의무화하여 비용-효과적인 수집체계가 구축.
- 일곱째, 재활용 의무대상 포장재에 대해서는 소비자가 쉽게 식별하여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재질분류표시제, 재활용가능 표시제를 통합하여 새롭게 분리배출표시제를 도입.

■ 이번 시행령 개정내용에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 이외에도 합성수지부담금제도, 빈용기 보증금제도, 1회용품 관리제도 등에 대한 개선사항도 포함되어 있으며, 그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 우선 플라스틱 원료인 합성수지에 부과하는 부담금을 폐지하고, 재활용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플라스틱 포장재는 생산자책임재활용품목으로 편입하고, 나머지 플라스틱 제품에는 부담금을 부과하되, 재활용 여건과 기반이 갖추어질

〈생산자책임재활용 대상 품목〉

기존 예치금품목	제 품	TV, 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컴퓨터 등 가전제품, 타이어, 윤활유, 형광등, 전지류
	포장재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PET병(음식료품, 주류, 화장품, 세제류, 일부 의약품 등)
신규도입 품목	제 품	이동전화단말기, 오디오
	포장재	플라스틱포장재(음식료품, 의약품, 주류, 세제류, 화장품 등), 스티로폼 완충제(전자제품)

경우 단계적으로 생산자책임제 활용 대상 품목으로 편입시켜 나갈 계획.

- 그리고, 공병을 사용하는 주류 및 청량음료의 제조업자가 자유로운 선택에 의해 빙용기보증금제 또는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를택할 수 있도록 하고,
- 빙용기의 반환율 목표를 80%로 규정하고 이에 미달하는 수량에 대해서는 재활용부과금을 부과하도록 하여 공병의 재사용이 촉진되도록 개선방안을 마련.
- 또한, 1회용품의 범위에 경기장 등 체육시설의 1회용 응원용품을 포함하여 이를 무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음식점 등의 1회용 비닐식탁보 사용을 신규로 규제.

■ 이번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의 시행으로 생산자가 폐기물의 회수·재활용을 직접 수행하거나, 재활용 사업자에 대한 지원을 실시함으로 인해 재활용 산업이 크게 신장될 것으로 예상.

■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의 도입을 계기로 향후 품목별 재활용률을 높이고 대상 품목을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생활폐기물의 경우 현재 47%인 매립률을 2011년에는 17%로 줄이는 대신 재활용률은 41%에서 53%로 제고시켜 나가는 등 우리 사회를 자원순환형 사회로 앞당겨 전환시켜 나갈 계획.

서론2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표시제도」주요내용

- 폐기물의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시행에 따라 2003년 1월부터 금속캔, 유리병, 종이팩, 플라스틱 등의 재활용가능여부와 각 가정으로부터 분리배출 여부를 표시하는 새로운 마크제인 '분리배출표시제'가 2003년 1월부터 시행.
- 분리배출표시를 의무적으로 하여야 하는 품목으로는 생산자재활용의무 대상 포장재인 음식료품류, 농·수·축산물류, 세제류, 의약품류, 화장품류 등의 용기·포장재인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포장재(용기류, 받침접시류) 등이며, 이러한 제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포장재에 "분리배출표시"를 하여야 함.

■ '03.1.1일부터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 시행시기와 맞추어 종전의 "재질분류표시제"와 "재활용가능표시제"를 통합하여 국민들이 보다 쉽게 분리배출할 수 있도록하기 위해 분리배출표시제를 제정·시행.

■ 분리배출표시는 인쇄 또는 각인을 하거나 라벨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식별이 용이하도록 정면 또는 측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최소 크기를 가로, 세로 각각 8밀리미

터 이상으로 표시하도록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함.

- 다만, 각 포장재의 표면적이 50제곱센티미터 미만인 포장재와 내용물의 용량이 30밀리미터 또는 30그램 이하인 용기 등을 소재·구조면에서 표시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 분리배출표시 적용에 예외.

■ 분리배출표시제는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은 하되, 재활용의무 생산자가 분리배출표시를 위해서는 포장재의 성형, 각인, 인쇄공정 변경이 필요하므로 공정변경에 따른 사업자들의 준비기간을 감안, '03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표시를 완료하도록 하여 사업자의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함.

- '03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표시대상인 모든 포장재는 분리배출표시를 완료하여야 하며,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 분리배출표시 대상 포장재 이외의 제품포장재중 재활용이 가능하여 분리배출표시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한국자원재생공사의 지정을 받아 "분리배출표시"를 할 수 있음.

서론3

1회용품 규제제도 강화주요내용

■ 환경부는 사회적·환경적 비용을 수반하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규제 강화, 1회용 응원용품 등

의 신규규제 등을 골자로 하는 1회용품 규제 관련 시행규칙을 강화.
- 이번에 강화되는 내용은 홍보와 업계의 준비기간 등을 감안 '03.7.1부터 시행될 예정.

■ 주요 개정내용

①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내 즉석판매·제조가공업 등: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억제
- 백화점 등 대규모 점포에 한하여 떡, 만두, 순대, 반찬류를 담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에 대한 규제 확대
※ 상당수의 백화점, 할인점 등의 대규모 점포내 식품매장 등에서는 1회용 합성수지용기 사용에 대한 소비자의 거부감을 감안 이미 종이나 펄프몰드 용기로 대체하고 있음

② 33m²미만의 도·소매업 : 1회용 비닐봉투 무상제공금지(조례로 정함)
- 33m²이상의 업소에 대해서는 현행과 같이 1회용 비닐봉투를 유상판매하도록 하되, 비닐봉투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33m² 미만의 업소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장이 규제대상을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함
- 규제제외 대상이었던 약국, 서점도 규제대상에 포함
③ 운동장·체육관·종합체육시설에서의 1회용 응원용품 무상제공금지

- 프로스포츠 경기 등에서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수거 및 처리에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는 1회용 막대풍선 등의 응원용품을 신규 규제

④ 90% 이상 회수재활용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있는 매장규모의 제한

- 최근 들어 증가하고 있는 패스트푸드점 등의 1회용품 사용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규제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사용억제 인정 대상 매장 규모를 150m²미만으로 제한
※ 규모가 150m² 이상인 매장에서는 1회용품 사용 금지(다회용 용기로 전환하여야 함)

⑤ 식품접객업소(음식점)·집단급식소에 대한 1회용품 사용 억제

■ 참고로 '02.2.4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법'이 개정되어 1회용품 관련 규정 위반시 벌칙이 강화(3개월 이행명령후 과태료부과 → 즉시 과태료부과)됨에 따라 본 바, 1회용품 규제제도의 실효성이 확보될 것으로 예상.

2003년 1월부터는 사업주 및 근로자가 납부해야 하는 고용보험료의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노동부는 보험료율 인하, 사업주 및 근로자에 대한 지원 확대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고용보험법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지금까지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임금의 1%를 실업급여 고용보험료로 납부하였으나 앞으로 0.9%를 납부하게 되며, 사업주가 고용안정사업 보험료로 0.3%를 납부하던 것을 절반 수준인 0.15%를 납부하게 된다.

한편, 중장년층의 취업을 촉진하기 위하여 실업자 재취직 훈련을 수료한 40세이상 중장년 실업자를 채용한 500인이하 제조업 사업주에게는 1년간 1인당 총 420만원(채용후 3월은 60만원씩, 그후 3개월은 40만원, 나머지 6월은 20만원씩)이 지원된다.

또한, 영세 소규모 중소기업(50인미만) 소속 근로자는 퇴근후 자비로 훈련을 받는 경우에 100만원 한도내에서 수강료 전액을 지원받게 된다.

아울러, 재직 근로자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였던 실업자에게 자바·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 등 고액의 훈련 수강에 필요한 수강료 전액(300만원 한도)이 저리로 대부된다.

※ 이자율은 재직자는 1~2%, 실업자는 2%선에서 결정할 예정임(미정)

그 외에도 1세미만의 영아를 가진 근로자가 육아휴직시 지원하는 육아휴직급여액은 현재 월 20만원에서 월 30만원으로 인상된다.

노동부 관계자는 "금번 시행령 개정으로 취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취업이 촉진되고 근로자의 훈련 참여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